

2019학년도 전기(2020년 2월)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

2019. 11. 27.(수)

1. 근거: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(시험면제)

제7조(시험면제)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<본조신설 2008.3.1., 개정 2013.3.1.>
 1~3. (생략)
 4.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<개정 2014.3.1.>
 5. (생략)
 6.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<개정 2018.3.1.>
 7. (생략)

2.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

가.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

- 봉사활동·졸업시험·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

※ 기수료자의 수료 사유 조회 방법: [인제정보시스템](#) > [학사관리](#) > [졸업](#) > [졸업대상자관리](#) > [졸업사정출력](#) > [졸업학년도학기:2018후기\[학부\]](#) 선택 > [출력구분:미졸업자내역](#) 선택 > [대상구분:전체](#) 선택 > [소속](#) 선택 > [출력](#)

나.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

- 졸업학점 충족, 봉사활동·졸업시험·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)

3.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

구분	인정기준	증빙서류
국내직장 취업자	현재 재직자(2019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)	재직증명서, 직장의료보험
해외직장 취업자	현재 재직자(2019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)	비자사본, 고용계약증빙서류 (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)
농어업 종사자	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	농업(어업)인확인서, 농업(어업)경영체 등록확인서
개인창작 활동종사자	공연, 전시, 출판 및 출판, 영상제작기관, 저작권등	아래 <표1> 참조
프리랜서	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,056,690원이상인 자	국세청 소득금액 증명, 종합소득세 신고서류
자영업자	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	사업자등록증, 납세내역 증명서

※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19년 12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, 2019년 11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<표1>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

실적유형		증빙자료	비 고
공 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등록증 •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•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•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 	4가지 모두 제출
전 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등록증 •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•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•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 	4가지 모두 제출
출판 및 출판	오프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 •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• 인쇄 증명서 • 발간된 출판·출반물 원본 	4가지 모두 제출
	온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-book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•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계약서 •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·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 	3가지 모두 제출
영상제작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 (영상물,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) 	제출
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탁기관*과의 신탁체결서 •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<p>*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, 한국음원제작자협회,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, 한국방송실연자협회,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, 한국방송작가협회,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,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</p>	2가지 모두 제출

4. 제출기한: **2019. 12. 20.(금)까지**

※ 단과대학별 학과(부) 서류 제출 기한은 별도 지정 요망

※ 학생 신청기한: 2019. 12. 16.(월)까지

5. 제출서류(단과대학 취합하여 제출 요망)

가. 단과대학 공문 1부.

나. 학과(부)별 신청 현황(【붙임2】 서식에 의거 작성) 1부.

다. 증빙서류 각 1부.

끝.